【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(공시송달)공고 제2026-93호】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 출석통지 불응 및 연락두절로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11. 17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



1. 건　　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　　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전○정	1997.11.13.	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7길 (이하 생략)	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	2회에 걸쳐 출석통지 하였으나 미출석 및 연락두절	수급자격 인정 철회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: 2026. 11. 17. ~ 2026. 12. 1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최복희(☎: 02-2077-345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